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3다62033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
대표이사 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현 담당변호사 이두성
피고, 상고인 1. 백○○
2. 김○○
피고들 주소 충남 당진군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억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나12108 판결
판 결 선 고 2004. 2. 2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서면동의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백○○이 주피보험자인 피고 김○○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비채변제 여부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 ○○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 한다) 및 ○○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가 주피보험자인 피고 김○○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체결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이어서 그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되어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등이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그랑프리 보험계약, ○○보험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으뜸보장 보험계약과 건강생활골드 보험계약(보험계약 체결 후 ○○생명이 위 각 보험계약을 승계하였다), ○○생명의 건강가족 보험계약은,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이 선고된 지 2개월 남짓 경에 체결되었고 그 보험금은 1997. 4. 16.부터 2001. 11. 12.까지 사이에 지급된 사실, 위 각 보험계약은 모두 피고 백○○이 해당 보험회사의 영업소에 나와 체결하였는데, 각 보험계약청약서(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자필서명란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백○○’, 주피보험자 ‘김○○’, 종피보험자(배우자) ‘백○○’의 각 기재는 모두 백○○의 필체이며 육안으로 보아도 동일인의 필체임이 명백한 사실, 원고, ○○생명, ○○의 각 해당 영업소 소장은 위 각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청약서를 심사하고 실명확인을 한 것으로 각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서면동의를 없는 타인생명보험계약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은 대부분 자필서명 없이 이루어졌는데 위 판결이 선고된 후 보험가입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해약요구가 급증하게 되자 생명보험회사들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어도 종전의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유효하게 취급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보험감독원은 1996. 12. 10. 생명보험협회에 보낸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계약의 사정·유지·관리업무 철저’라는 공문에서 ‘앞으로 보험사는 기존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형식적인 서면동의를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무효로 하는 등 선의의 계약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향후 체결될 보험계약에 관하여 ‘향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서 대필 등 부당, 부실 모집행위를 근절하고 계약체결시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모집종사자에 대한 교육강화와 피보험자 서면동의 절차와 관련된 제도개선 및 계약자서비스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촉구한 사실,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통상 보험계약의 효력과 보험금지급사유에 관한 심사를 거치는 사실, 피고 백○○은 1997. 2. 27. ○○생명과 사이에 건강가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1997. 3.경 피고 김○○이 추락사고로 장애 5급에 해당하는 요추부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1998. 5.경 그 장애가 3급에 해당한다며 추가로 보험

금을 청구하여 ○○생명으로부터 함께 20,157,36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직원으로 보이는 고○○으로 하여금 조사·작성하게 한 1997. 10. 30.자 수익자 확인서(을 제2호증의 4)에는, '상기보험은 남편이 가입하였으며, 서명도 남편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피고 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서면동의 없는 타인생명보험계약이 무효라는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 37084 판결이 선고되기 전후의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험업계의 상황과 보험감독원 및 생명보험회사들의 조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계약의 사정·유지·관리업무 철저'라는 보험감독원의 공문에 포함된 내용들이 생명보험협회를 통하여 원고와 ○○을 포함한 산하 생명보험회사에 전달되어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소 소장들은 적어도 다른 경로를 통하여서라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후 얼마되지 아니한 시점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시 각 보험회사의 해당 영업소 소장들은 그 이전과는 달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청약서를 심사함에 있어 자필 서명에 의한 서면동의 유무를 확인하여 보았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과 보험금지급사유에 관한 심사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생명의 경우는 심사과정에서 그 보험을 남편인 피고 백○○이 체결하였고 서명도 피고 백○○이 하였다는 주피보험자인 피고 김○○의 진술까지 청취한 이상, 원고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 해당 보험계약이 피고 김○○의 서면동의 없이 보험계약자인 남편 피고 백○○에 의하여 체결되어 무효라는 점을 알았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피고 김○○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는 점을 원고 등이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들의 비채변제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는, 타인생명보험계약에 있어 서면동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강국	_____
주심	대법관	유지담	_____
	대법관	배기원	_____
	대법관	김용담	_____